

휴학·자퇴하여 등록금 반환이 생길 경우 (전문·특수원)

🔸 등록금 반환 금액 = 납부한 금액 - 차감 금액

🔸 납부금액

- ✓ 분할납부 미신청 시 - 등록금 + 자율경비 + 졸업관련비
- ✓ 분할납부 신청 시 - 휴학/자퇴 신청 이전까지 납부한 금액
- 2회 분할

- 1차(납부기간 8. 22 - 29): 수업료 60% + 자율경비 + 졸업관련비
- 2차(납부기간 10. 10 - 12): 수업료 40%

🔸 차감 금액 기준 (단, 일자는 2011-2학기 기준!)

차감 금액 기준	휴학·자퇴 시점	등록금 반환 금액	비 고
추가등록 기간까지	~ 9. 15	전공별 수업료&건강공제회비의 전액 반환	일반휴학접수 마감일: 11. 15
학기 개시 후 30 일	9. 16 ~ 9. 30	전공별 수업료&자율경비의 5/6 반환(즉, 1/6 차감)	
학기 개시 후 60 일	10. 1 ~ 10. 31	전공별 수업료&자율경비의 2/3 반환(즉, 1/3 차감)	
학기 개시 후 90 일	11. 1 ~ 11. 29	전공별 수업료&자율경비의 1/2 반환(즉, 1/2 차감)	

※ 전공별 수업료는 감면액, 장학금 등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🔸 예시

✓ 분할납부 미신청 시

: 수업료 6,210,000원 + 자율경비 15,000원 = 납부한 금액 합계 6,225,000원

차감 금액 기준	휴학·자퇴 시점	등록금 반환 금액	비 고
추가등록 기간까지	~ 9. 15	6,225,000 원	일반휴학접수 마감일: 11. 15
학기 개시 후 30 일	9. 16 ~ 9. 30	5,187,500 원	
학기 개시 후 60 일	10. 1 ~ 10. 31	4,150,000 원	
학기 개시 후 90 일	11. 1 ~ 11. 29	3,112,500 원	

✓ 분할납부 신청 시 (2차 분할 납부)

: 납부금액은 분할납부한 총 금액의 합계

※ 5/6반환은 1/6 차감을 의미 (단, 졸업관련비는 전액 반환, 원우회비는 전액반환기간까지만
액반환 이후에는 반환 없음)



수업료 5/6 반환기준일인
시점에 휴학 신청하면?

납부금액 : 3,741,000원 (= 1차분할납부금 수업료의 60% + 자율경비)

- 차감금액 : 1,037,500원 (= 1,035,000원(수업료1/6) + 2,500원(자율경비1/6))

총 반환금액 : 납부금액 - 차감금액 = 3,741,000원 - 1,037,500원 = 2,703,500원